

정정 신고 (보고)

2020년 12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6월 11일
3. 정정사유 : 환매수수료 삭제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	<p>①~④ (생략)</p> <p>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p> <p>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p> <p>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①~④ (현행과 동일)</p> <p>⑤ <삭제></p> <p><삭제></p> <p><삭제></p>
제41조(환매수수료)	<p>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p>	<p>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u>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u></p> <p><u>1. 종류A 수익증권, 종류Ae 수익증권, 종류C1 수익증권, 종류C2 수익증권, 종류C3 수익증권, 종류C4 수익증권, 종류Ce 수익증권, 종류CI 수익증권, 종류S 수익증권, 종류CF 수익증권, 종류CW 수익증권, 종류S-I 수익증권, 종류AG 수익증권, 종류CG 수익증권</u></p> <p><u>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u></p> <p><u>2. 종류C-P 수익증권, 종류C-Pe 수익증권, 종류S-P 수익증권, 종류C-P2 수익증권 및 종류CF-P 수익증권 : 없음</u></p> <p><u>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종류C-P, 종류C-Pe 및 종류S-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u></p>	
<p>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p>	<p>①~③(생략)</p> <p>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①~③(현행과 동일)</p> <p>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p>	<p>①~②(생략)</p> <p>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 <삭제></p>

	<u>니한다.</u> ④~⑤ (생략)	④~⑤(현행과 동일)
부칙	(신설)	<u>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u>